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9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심상정·류호정·강은미

이은주 · 배진교 · 장혜영

정성호 • 박영순 • 김민석

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세계 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체결함.

한편, 우리 사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빈곤의 고착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바,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정치·산업 구조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산업의 충격, 실업률의 증가, 지역 사회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

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 및 그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등 각종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그린뉴딜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탈탄소사회국가전략 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 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탄소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반복적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그린뉴딜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탈탄소사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 감 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사회를 말한다.
- 2. "그린뉴딜정책"이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 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심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 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

공투자 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말한다.

- 3.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정 책의 추진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4.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 실가스를 말한다.
- 5. "온실가스 순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량을 뺀 것을 말한다.
- 6.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말한다.
- 7.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 8. "기후위기"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기후체계의 영구적인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9.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 제3조(그린뉴딜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그린뉴딜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 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등 각종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 2.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 3.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사회기반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되, 민간부문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5.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하천, 산림, 해안 등 국토를 탈탄소사회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6.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의 추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할 때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그린뉴딜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그린뉴딜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6조에 따 른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

- 제6조(탈탄소사회국가전략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이하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탈탄소사회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사항
 - 2. 탈탄소사회로의 단계적 이행 및 탈탄소사회국가전략 보완에 관한 사항
 - 3.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조세·금융에 관한 사항
 - 5. 그린뉴딜정책 추진으로 감축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에 과한 사항
 - 6.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 계획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 려하여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 하여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1 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그 밖에 탈탄소사회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탈탄 소사회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제11조 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 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탄소사회국가전략 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1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과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3장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 등

- 제11조(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의 탈탄소사 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의 수립 · 변경 · 시행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관 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린뉴딜정책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4.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린뉴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 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 6. 제15조에 따른 그린뉴딜특별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업무 중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민간위원: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 및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수 있다.
- 제15조(그린뉴딜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그린뉴딜특별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

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2.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3. 그 밖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법인·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그린뉴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 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